

# 유효투표 예시

깨끗한 경쟁,  
현명한 선택,  
희망찬 조합

## 01 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

- ① 표가 일부만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
- ② 표 안이 완전히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

(도봉산에 유효)

○○농업협동조합장선거

1 백 두 산

2 한 라 산

3 관 악 산

4 도 봉 산

5 계 룡 산

6 금 강 산

7 수 락 산

투표관리관

(도봉산에 유효)

○○농업협동조합장선거

1 백 두 산

2 한 라 산

3 관 악 산

4 도 봉 산

5 계 룡 산

6 금 강 산

7 수 락 산

투표관리관

## 02 투표용지가 오·훼손·축소 인쇄 또는 사인날인이 누락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

- ① 투표용지의 일부가 찢어지거나 축소 인쇄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으로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
- ②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었으나 투표록에 그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것  
※ 사인날인 누락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투표록 또는 투표용지 작성·관리 등에 의해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봄
- ③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으로 더럽혀진 것

(한라산에 유효)

○○농업협동조합장선거

1 백 두 산

2 한 라 산

3 관 악 산

4 도 봉 산

5 계 룡 산

6 금 강 산

7 수 락 산

투표관리관

(백두산에 유효)

○○농업협동조합장선거

1 백 두 산

2 한 라 산

3 관 악 산

4 도 봉 산

5 계 룡 산

6 금 강 산

7 수 락 산

투표관리관

(금강산에 유효)

○○농업협동조합장선거

1 백 두 산

2 한 라 산

3 관 악 산

4 도 봉 산

5 계 룡 산

6 금 강 산

7 수 락 산

투표관리관

## 03 후보자(기호·성명·기표)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

- ① 기표란에 기표되고,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표를 추가한 것 (접선되지 않은 것)
- ② 기표란에 기표되고, 투표지 뒷면에도 표를 한 것

(계룡산에 유효)

○○농업협동조합장선거

1 백 두 산

2 한 라 산

3 관 악 산

4 도 봉 산

5 계 룡 산

6 금 강 산

7 수 락 산

투표관리관

(도봉산에 유효)

○○농업협동조합장선거

1 백 두 산

2 한 라 산

3 관 악 산

4 도 봉 산

5 계 룡 산

6 금 강 산

7 수 락 산

투표관리관

(백두산에 유효)

○○농업협동조합장선거

1 백 두 산

2 한 라 산

3 관 악 산

4 도 봉 산

5 계 룡 산

6 금 강 산

7 수 락 산

투표관리관

‘앞면’

‘뒷면’

## 04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

- 한 후보자(기호·성명·기표)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

(한라산에 유효)

○○농업협동조합장선거

1 백 두 산

2 한 라 산

3 관 악 산

4 도 봉 산

5 계 룡 산

6 금 강 산

7 수 락 산

투표관리관

## 05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

- ① 후보자(기호·성명·기표)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
- ②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

(백두산에 유효)

○○농업협동조합장선거

1 백 두 산

2 한 라 산

3 관 악 산

4 도 봉 산

5 계 룡 산

6 금 강 산

7 수 락 산

투표관리관

(금강산에 유효)

○○농업협동조합장선거

1 백 두 산

2 한 라 산

3 관 악 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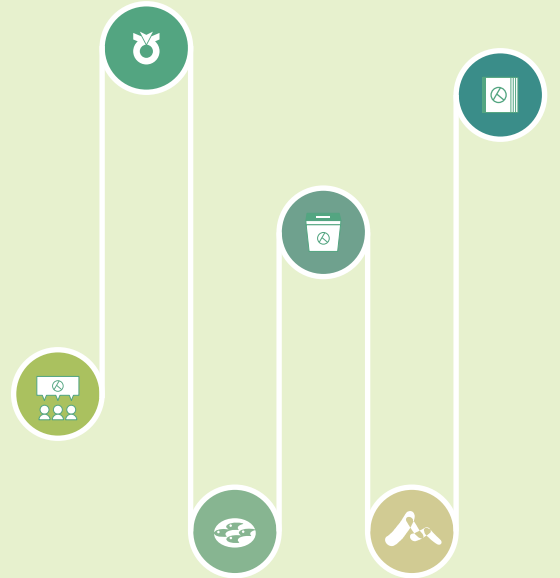
4 도 봉 산

5 계 룡 산

6 금 강 산

7 수 락 산

투표관리관



2023. 3. 8. (수)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

# 유·무효투표 예시

선거일

2023년 3월 8일

오전 7시 ~ 오후 5시

# 무효투표 예시

## 01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

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

## 02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

- ① 구·시·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
- ② 투표지의 청인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 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

## 03 어느 란에도 ㉠ 표를 하지 않은 것

어느 란에도 ㉠ 표를 하지 않은 것 (어느 후보자 란에도 접선되지 않은 것)

## 04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

- ①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
- ② 서로 다른 후보자(기호·성명·기표)란에 2개 이상의 ㉠ 표를 한 것

## 05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

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(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)를 확인할 수 없는 것

## 06 ㉠ 표를 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

- ① ㉠ 표를 하고 문자(좋다, 나쁘다, 공명선거 등) 또는 물형(○, □, V, X, △ 등)을 기입한 것
- ② ㉠ 표를 하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,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

※거소투표의 경우 무인을 한 것은 유효

## 07 ㉠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

- ① ㉠ 표를 하지 않고 문자(좋다, 나쁘다, 공명선거 등)를 기입한 것
- ② ㉠ 표를 하지 않고 물형(○, □, V, X, △ 등)을 기입한 것
- ③ ㉠ 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

※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

※거소투표의 경우 무인을 한 것은 유효

## 08 공개된 투표지 및 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

- ① "공개된 투표지"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
- ② "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"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

# 우편투표의 유·무효처리

## 우편투표(거소투표)의 봉투 관련 무효투표

- 정규의 회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
- 봉투가 봉합되지 않거나 개봉한 흔적이 있는 것
- 봉투가 투표지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찢어진 것
- 봉투안에 투표지 외에 편지·메모 등이 들어 있는 것
- 봉투에 타인의 성명·거소 기재 또는 인장이 날인된 것
  - ※ 봉투에 선거인 본인의 성명·거소 기재 또는 인장이 날인된 것은 유효임.
- 기타 봉투겉면에 무효사유가 기재된 붙임쪽지가 붙어 있는 것

## 다음의 경우 해당 선거의 투표지만 무효처리

- 봉투안에 같은 선거의 투표지가 2매 이상 들어있는 것
  - ※ 같은 선거의 투표지는 모두 무효처리 하고, 나머지 투표지는 정상적인 투표지로 처리
- "공개된 투표지"라고 표시된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

## 거소투표자의 표시방법에 따른 유·무효

- 유효**
- ○, □, V, X, △ 등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물형으로 표를 한 것
  - 무인으로 기표(날인) 한 것

- 무효**
- "좋다", "나쁘다" 등 문자를 기재한 것
  - 도장으로 기표(날인) 한 것